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55호 2017. 7. 11(화)

포항시보

◀ 고 시 ▶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제2017 - 97호) 2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여 고시(제2017 - 98호) 4

◀ 공 고 ▶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제2017 - 225호).....9

회								
람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7 - 97 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7. 3.

포 항 시 장

-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남구 지곡동 산116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 명 칭 :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사업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포항시 남구 지곡동 601번지
 - 성 명 :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 이강덕
- 4. 사업계획 내용
 - 사업기간
 - 당초 : 2001.5.2 ~ 2017.12.31.
 - 변경 : 2001.5.2 ~ 2022.12.31.
 - 면적 또는 규모
 - 건축연면적(건축면적) : 63,723㎡(18,446㎡) - 변경없음
 - 연구개발시설용지 건축규모 조정 : 연면적 39,665㎡ ⇒40,901㎡(증1,236㎡)
 - 지원 시설용지 건축규모 조정 : 연면적 24,058㎡ ⇒22,822㎡(감1,236㎡)
 -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 ㎡)

구 분	계	연구개발 시설용지	지원시설 용지	공공시설용지				
				소계	도로	오수처리시설	배수지	녹지
당 초	139,298	38,604	31,979	68,715	8,774	933	2,061	56,947
변 경	139,298	40,608	29,975	68,715	8,774	933	2,061	56,947
증 감	-	증2,004	감2,004	-	-	-	-	-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불임
- 6.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포항시 남구]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지곡	601	대	16,729	16,729	포항시 남구 지곡동 601	(재)포항 테크노파크			
2	지곡	909	대	1,809	1,809	포항시 남구 지곡동 601	(재)포항 테크노파크			
3	지곡	911	대	2,030	2,030	포항시 남구 지곡동 601	(재)포항 테크노파크			
4	지곡	산116	임	121,800	118,727	포항시 남구 지곡동 601	(재)포항 테크노파크			
5	지곡	산119-2	임	3	3	포항 대도동	이*범			
계					139,298					

포항시 고시 제 2017-98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여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포항시가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포 항 시 장

□ 참여목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대도시 특수성을 반영한 차등분권 실현

□ 참여 도시 현황 : 15개 대도시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 협의회 구성

- 대 상 : 인구 50만 이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 조직형태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주요기능
 - 대도시 특례 등 대도시 자치 강화 관련 공동 연구 추진
 - 대도시 특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활동
 -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분권 개헌 관련 포럼·세미나 개최
 - 기타 협력사업 공동대응 등
- 회의개최 : 정기회의 연 4회,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부 담 금 :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자격은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시장으로 한다.

②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자격요건이 성립된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②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임원 및 운영

제5조(임원의 구성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을 3인 이내로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 시점부터 차기회장 선임까지의 기간은 마지막 회장이 속한 단체에서 수행한다.

- 제7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별 윤번제로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 분기 1회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제9조(개회 및 의결방법)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인 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 ③ 협의회 의결은 제8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의 동의를 얻어 서면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협지사항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건의한다.

1.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2.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4. 회원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5. 기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사 무 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

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도시의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국 운영경비, 인건비, 실비보상비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대도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입안
2. 유관기관과의 협의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관리
4. 회의계획 수립, 회의자료 작성 및 통보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자문위원) 협의회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협의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재 정

제14조(경비부담등) ① 협의회는 적립된 회비와 회원 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② 부담금은 정기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③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는 세입·세출예산은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② 협의회 집행예산은 연 1회 정산·결산하여 회계연도 마감 60일 이내에 보고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약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③ (적용례)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제11조 및 제12조 의거 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하며 사무국 설치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준용한다.(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은 사무국장이 임명된 날로 본다.)

공 고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공고 제2017-2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홍해 성내 도시계획도로(중1-99) 개설공사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3.

포 항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도로사업 / 홍해 성내 도시계획도로 (중1-99) 개설공사	포항시 북구 홍해읍 옥성리, 성내리	도로개설 (L=150m, B=20m)	실시계획작성일 ~ 2020. 12. 31.	포항시장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2.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7. 7. 3. ~ 2017. 7. 22.(20일간)
- 열람장소 :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도로시설과(054-270-3434)
- 주민의견 및 이의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3.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별첨)

- 상기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 일체
- 토지 및 물건의 내역은 별첨과 같으며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4.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개별통지)
- 보상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협의불성립 시 : 수용재결 후 공탁)
- 감정평가사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5. 기 타

- 보상계획은 추진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편입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 면적은 분할측량 등의 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도로시설과(054-270-3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